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불법정보 차단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 신설〉

■ 신동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457호)

2024.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불법정보 차단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 신설(안 제44조의11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신동욱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4. 9. 30.

다. 회 부 일 : 2024. 10.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음.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그런데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의 유통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해당 범죄 등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재판이 완료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됨.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매출액 규모에 비하여 벌금 수준이 미미하여 실효성이 낮은 측면이 있음.

이에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Ⅲ. 검토의견

1. 불법정보 차단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 신설(안 제44조의11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4조의7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44조의11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44조의11(과징금의 부과 등) ①</u> <u>방송통신위원회는 제44조의7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매출액 산정</u>

현행	개정안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2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

현행	개정안
	<u>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u> <u>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u>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44조의7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등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불법정보)를 규정하고,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¹⁾.

○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 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 사이버 명예훼손,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킴에 따라 불법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하여 불법정보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
- 1)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관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전기통신사업법」과 같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조치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법정보 관련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제44조의7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²⁾,

현행법에도 이미 의무이행확보수단이 마련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벌금 등의 중복적인 금전제재를 규정하는 것이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³⁾.

다만, 수범자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사실상 중복적인 제재를 받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음⁴⁾.

2)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결정

4) 이러한 우려에 따라, 하나의 금전 제재를 부과한 경우 다른 제재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금액을 감액하도록 하는 입법례도 있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8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47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7(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

- 특히 정보통신망법의 정의규정에 따르면 사업의 규모나 종류와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기만 하면 모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포함되므로⁵⁾, 영세 사업자나 블로그·카페 운영자 등까지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40건 중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1건에 불과함을 고려할 때, 현행 시정명령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의무이행확보수단을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방자치단체장은 할당오염부하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로부터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또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 해당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현황>

연도	방심위 시정요구 결정					방통위 시정명령*		
	소계	삭제	이용해지 · 정지	접속차단	기타	소계	사업자 이행완료	사업자 미이행
2022	231,883	17,633	21,865	191,988	397	4	4	-
2023	252,144	8,925	23,219	219,722	278	33	32	1
2024.9.	234,335	12,137	19,406	202,620	172	3	3	-
계	718,362	38,695	64,490	614,330	847	40	39	1

*방심위 시정요구 결정에 따른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벌칙규정의 경우 사법절차의 엄격성으로 인해 법 집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는 반면, 과징금 부과는 간이한 절차에 따른 신속한 법 집행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가능해 온라인상 불법정보 유통 억제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을 수용하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불법정보 차단명령 미이행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타 위반행위보다 그 불법성 혹은 중대성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하기 어려움에도 이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30